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	마모시크전시 (마리도시 마로시 되기다)
	담당IT검사국담당자안기복 연락처02-3145-7429부서(직위, 성명)선임검사역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사설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용 클라우드서비스를 빅데이터 분석 목적으로 SaaS와 연결*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른 망분리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* 동일 클라우드서비스 내에서 금융회사의 사설 네트워크와 SaaS사업자의 사설 네트워크를 인터넷에 트래픽을 노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판단이유	 □ 금융회사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 및 접속금지하여야 합니다. 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) ○ 다만,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고, 금융회사가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<별표 7>에서 정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를 적용하였으며, 이를 정보보호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. (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3항) □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내부통신망과 연결하여 이용 중인 전용 클라우드를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·차단 및 접속금지되지 않은 SaaS와 연결하는 것은 귀사의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이 연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, ○ 데이터 분석 목적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2조의2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망분리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.

- ※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 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